

심사보고서

-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09. 12. 15.

건설문화위원회

1. 심사 경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 및 회부일자

제출일자 : 2009년 9월 30일

회부일자 : 2009년 10월 5일

상정일자 :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
2009. 12. 2 :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
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환경국장 지용옥)

제안 이유

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9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구성인원의 전문성 다양화를 추진하고, 나날이 복잡·다양화되고 있는 환경분쟁의 신속·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.

□ 주요 내용

-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(제2조)
 - 위원장(행정부지사)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
-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제3조)
 - 분쟁사건마다 심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
 -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등에게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
-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조정비용을 규정(제4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문화전문위원 운영 해)

-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- 환경분쟁의 대상이 복잡·다양화 되고 있는 가운데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구성인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직제변경에 의한 담당과장의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
-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 또한 이행하였기에
-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론 : 원안 의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환경분쟁조정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를 “환경분쟁조정법”으로, “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”라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,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9인”을 “1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상용하는 직에 3년 이상”을 “상당하는 직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인을 두고”를 “1명을 두되”로, “환경과장”을 “환경정책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”을 “환경분쟁조정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으로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심사관으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의”를 “관계전문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<u>환경분쟁조정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</u> <u>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	제1조(목적) <u>환경분쟁조정법</u> <u>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</u>
제2조(위원회 구성)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, 부위원장은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. ②(생 략) ③당연직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.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1.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2.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3. 환경관련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	제2조(위원회 구성)① <u>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1명.....15명..... ②(현행과 같음) ③.....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<u>2명</u> 1..... 2..... <u>상당하는 직에</u> 3. ④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원회 운영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<u>1인을 두고</u> , 간사는 <u>환경과장</u> 이 된다.	제3조(위원회 운영) ①..... <u>1명을 두되</u> , <u>환경정책과장</u>
②(생 략)	②(현행과 같음)
③.....	③.....
법.....	<u>환경분쟁조정법</u>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.
④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<u>심사관</u> 으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의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	④..... <u>관계전문가</u>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환경분쟁조정법 제15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, 부위원장은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.

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③당연직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.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
2.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
3. 환경관련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

제3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된다.

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③위원장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분쟁사건마다 심사관을 지명하여야 하

며,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사관 및 위촉된 관계전문가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환경분쟁조정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④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조정비용) 법 제6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행하는 알선, 조정, 재정 또는 증거보전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당사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위원회의 위원·심사관·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
2.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자의 출장에 드는 비용
3.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
4. 분쟁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

제5조(수수료) ① 위원회에 알선·조정·재정 등의 신청을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충청북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③알선·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때에는 증가전 수수료와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수 수 료

신청별	조정가별 수수료
알선신청	10,000원
조정신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: 10,000원 2.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: 1.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.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
재정신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: 20,000원 2.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: 1.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3.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
참가신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조정절차참가신청 :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. 재정절차참가신청 :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
증거보전신청	5,000원

비고 :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,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환경분쟁조정법

제7조 (위원회의 구성등)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.

② 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되, 위원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.

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 (위원회위원의 임명) ①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1. 1급 내지 3급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

2. 삭제 <2005.12.29>

3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

4.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

5. 환경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

②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③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에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.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④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.

제13조 (사무국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② 사무국에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둔다.

1.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
2. 환경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·개발
3.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호의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5조 (규칙 제정)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대한 처리 절차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.

② 지방조정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3조 (조정비용등) ①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.

② 위원회에 대하여 조정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(지방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시·도의 조례)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□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

제7조 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비상임위원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4조 (조정비용)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회의 위원·심사관·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
2.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관계전문가의 조사 비용
3.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자의 출장에 드는 비용
4. 법 제38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
5. 분쟁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

제35조 (수수료) ①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중앙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을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③알선·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때에는 증가전의 수수료와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④중앙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[별표 1]

수 수 료

신청별	조정가별 수수료
알선신청	10,000원
조정신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: 10,000원 2.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: 1.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.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
재정신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: 20,000원 2.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: 1.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3.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
참가신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조정절차참가신청 :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. 재정절차참가신청 :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
증거보전신청	5,000원

비고 :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,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.